#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35

제출연월일: 2020. 10. 26.

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20.1.7.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개정(2020.1.14.)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 (안 제3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비율 확대(안 제10조)

- 1/3 이상 → 1/2 이상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등(붙임)

다. 예산조치 :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반영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9. 21. ~ 10. 1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5)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실장이 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예산 · 도로 · 물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
-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0조제7항 본문 중 "제5항제3호"를 "제5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제3조 관련)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 나. 재난 예방·대비·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 라.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 요원 인건비
- 바.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수당 및 경비
- 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차. 인명구조 및 응급처지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 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 파.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 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 2. 대구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 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상 산사태 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 지역에 위치한 시설
  -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혀 행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와 같으며 세부용도는 별표와 같 다.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구</u> 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 1. 기금의 운용계획안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 3. 기금의 결산보고서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및

정

아

개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

<u>와 같다.</u>

- 제10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설치한다.
  - <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심의한다.</u>
  -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사항
  -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사항
  -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 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 장은 재난업무 담당실장이 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 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1.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도로업 무담당 부서장, 물관리업무담당 부서장
- 2. 삭 제
- 3.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 ⑥ (생략)
- 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u>다만</u>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⑧ (생략)

#### [별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제3조 관련)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장이 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예산·도로·물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u>장</u>
-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 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

-----. <u>다만</u>,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현행과 같음)

#### [별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제3조 관련)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 1) 장비 및 시설 임차, 교육 및 훈련 컨텐츠 제작
  - 2) 소모품 구입, 홍보, 민간인 여비, 급식비, 평가수당 등
-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 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라.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단, 준설은 하천의 당초 하폭·수심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
- <u>마.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u>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 <u>바.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u>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기·긴급·정밀)
- 사. 재난이 우려되는 사유시설에 대한 점검
  - 1)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 2)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검 용역(정밀안전진단 제외) 단,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 임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아.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함)의 보수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u>가.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훈련</u> <u>및 홍보</u>
- 나. 재난 예방·대비·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 라.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 요

   원 인건비
- 바.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 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 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 보강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

 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보강, 철거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 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 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 카.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
 2. 대구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

 는
 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보수·보강

 \_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제1

 항)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차. 인명구조 및 응급처지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 <u>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u>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
   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
   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 <u>파.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u>
- <u>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u> 경비
- 2. 대구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
   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계획 상 산사태 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3.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 는

시설의 보수·보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단, 방재시설인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은 제외(보수보강만 가능)

- 4.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2제1항)
- 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의2)
  - 1)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 2)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계측 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 3)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따른 붕괴위험 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재난 및 안전 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

   ·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 다.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등
- 라. 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1) 기존 용수시설 보수보강, 소형 간이 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등
  - 2) 관정개발, 소규모 용수관로 설치(댐 또는 강으로부터의 대형송수관 설치 등은 제외) 단, 사유시설은 자기 책임 으로 운용하며, 항구복구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긴급구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소방본부, 소방서)가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구입(국민 안전처 고시 구조장비기준 [별표1])
-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가. (감염병)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열화상 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위생용품 등
- 나. (가축질병) 이동통제소·소독시설 설치· 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단,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구입과 장비의 임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종 감염병 등 사전 대비가 어려운 재난이 발생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 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 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 나. 주택 임차비용을 융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단, 구청장·군수가 대피명령 또는 위험 구역 설정 후 출입금지·제한 등의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와 강제대피 조치로 인한 이주민에 대한 지원 및 융자
-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 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 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 라.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u>마.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지방자치</u> 단체 소유·관리시설 안전진단 등
-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 <u>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u>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용

- 1) 상담인력 인건비와 상담활동비
- 2) 출장경비, 물품구입비 등 기타 운영 경비
- <u>나. 재난심리전문가 및 자원봉사자의 상담</u> 활동을 위한 경비
- <u>다.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회복 지원을</u> 위한 경비
- 11.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재난 및 안전 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

## 관계 법 령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 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령으로 정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u>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u> 같다.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u>지방자치단체의</u> <u>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u>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 조치

-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u>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u>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u>기준을 정할 수 있다.</u>

#### □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2020. 1. 행정안전부)

#### 제6장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 1.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 ·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 시급성 · 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u>심의위원의 1/2이상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u> 여야 한다.

#### ※ 조례표준(안)

제 🔾 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시·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장이 된다.
-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시·군·구)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과장 등)
  -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필수포함)
  -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필수포함)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도(시·군·구)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재난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재난의 안심주 머니인 재난관리기금을 적기·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재난에 적극 대응하 고자 함

#### ○ 주요사업

-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우리시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 2. 비용 발생 요인

####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 재난 예방·대비·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에 따른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 전 요원 인건비
-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인명구조 및 응급처지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 나. 대구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 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 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 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 지역에 위치한 시설
-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 다.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내용을 근거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정치로 산정

#### 나. 추계 결과

○ 5개년도 전체금액

- 세출 485,315백만원(사업비 : 19,049백만원, 예치금 : 466,266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Й		207,558	64,443	67,665	71,048	74,601	485,315
사업비	소 계	6,300	2,958	3,106	3,261	3,424	19,049
	일반운영비	747	655	688	722	757	3,569
	일반보전금	23	23	24	26	27	123
	이주및재해보상금	50	50	52	55	58	265
	민간이전	200	200	210	220	232	1,062
	자치단체 등 이전	200	200	210	220	232	1,062
	시설비	3,880	630	662	695	728	6,595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1,000	1,000	1050	1103	1158	5,311
	자산취득비	200	200	210	220	232	1,062
예 치 금		201,258	61,485	64,559	67,787	71,177	466,266

- ※ 의무예치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예치

#### 다. 재원조달방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 기금의 운용수입금
- 그 밖의 수입금
- 5. 작성자: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장 김영철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k	∥ 입						
k	출	207,558	64,443	67,665	71,048	74,601	485,315
공공분야 재난관리 등		207,558	64,443	67,665	71,048	74,601	485,315
재원 조달		207,558	64,443	67,665	71,048	74,601	485,315
	소 계						
의존	보조금						
재원	지방교부세						
	소 계						
자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207,558	64,443	67,665	71,048	74,601	485,315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